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중복지원 허용 >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35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중복지원 허용	2

I. 개요

1.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35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명옥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26.
- (3) 회 부 일 : 2025. 3.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재난 회복력은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하층의 38.8%가 ‘아직 사회 재난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해 상층의 11.1%보다 27.7%p 높은 상황임.

이에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 거주하며 재난에 더욱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규정을 완화하여,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중복지원 허용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재난 극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과 함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재난 극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¹⁾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리고 교육 지원 등의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²⁾

□ 현행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³⁾에는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1)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3)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제2항4)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구호 및 재난지원금 등⁵⁾을 받는 경우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한 범위에서 현행법에 따른 긴급 지원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4)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5)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⁶⁾에 따라 일정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선포되는 것으로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과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등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구성체계 >

구분	내용
직접지원	재난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구호금·생계비·주거비)
	구호지원, 장례 및 장례비 지원, 의료비 지원
간접지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요금 감면
	유·무선 통신서비스 요금,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전파사용료 감면
	특허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감면
	TV 수신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립자원조성비 면제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자료: 재난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관계부처 합동)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3.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 이 중 생계안정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과 의료·교육지원은 현행법에 따른 긴급지원으로서의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과 그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⁷⁾에 대해서 재난 극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⁸⁾에 따르면,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고 회복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 지원이 재난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는데 필요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중복적인 지원을 통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법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이 없는 경우에 긴급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계층별 재난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FOCUS 433호, 2023

법 제3조제2항9)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됨.

즉, 현행법에 따른 긴급지원은 다른 제도적 지원이 없거나 부족하여 위기상황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때 비로소 개입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원칙이고, 그 예외에 대해서는 제도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여러 지원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난지원과 중복하여 긴급지원을 하는 것은 긴급 지원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10)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의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될 것으로 보임.

9)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하 각 호 생략)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보충성 원칙에 대해서도 예외가 인정되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보다 확대된 재난지원이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특별재난지역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타 법률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이 법에 따른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저소득 가구에게는 현행 법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므로 개정 실익이 낮음.

또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으로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려는 긴급복지지원 취지 및 재난안전법 제66조제3항 중복지원 제한 규정 개정 필요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 필요.

문 의 처
02)6788-5497